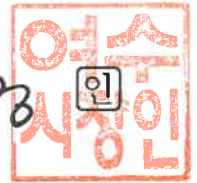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여수시 조례 제2231호

붙임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231호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성과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을 “성과우수·효행·모범”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여수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u>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 금품 지원</u></p> <p>5. ~ 7. (생 략)</p> <p>8. <u>성과우수· 효행· 모범· 장기 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u></p> <p>9. ~ 13. (생 략)</p> <p><u><신 설></u></p> <p><u>제16조</u> (생 략)</p>	<p>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5. ~ 7. (현행과 같음)</p> <p>8. <u>성과우수· 효행· 모범</u> ---- ----- ----- --</p> <p>9. ~ 13. (현행과 같음)</p> <p><u>제16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u> <u>시장은 여수시의회 의장과 협의 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u></p> <p><u>제17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p>